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

제출년월일 : 2023. 3.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의 정의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우대 근거 마련을 위하여 다른 조례의 관련 부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다. 실질적 우대 근거 마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협의 완료 (2022.8월)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1.24.~2022.12.13) 결과,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 5)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2.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제외)

2. 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

3. 군이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
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
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
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
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별표2]의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의 외래진료비(비급여 제외) : 면제

②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부터 제12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⑤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마목을 아목을 바목부터 자목으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⑥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관계법령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연락처	(033) 330 - 2150